

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
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를 우편발송(등기)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6. 10. 26.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1동장



- 공고명: 장애정도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
- 공고기간: 2026. 10. 26. ~ 2026. 11. 10.(14일간/초일미산입)
- 공시송달 대상

대 상 자		장애 유형	반송일	반송사유
성 명	주 소			
김**	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*, 10*동 2***호 (답십리동)	**	2026. 10. 23.(등기우편)	폐문부재

- 처분근거: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
- 공고방법: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-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
 - 제 출 처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1동주민센터
 - 제출기한: 2026년 11월 12일까지
 - 주 소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가정로 30
 - 문의사항: 02-2171-6544
 - 구비서류: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, 소견서, 검사결과지, 진료기록지

※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- 유의사항: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,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.